이사회 규정

한솔시큐어 주식회사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솔시큐어 주식회사의 이사회(이하"이사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본 규정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1.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5 조 (의장)
1.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단, 이사회에서 따로 선출하여 정할 수 있다.
2. 이사회 의장의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대표이사, 상근 사내이사, 비상근 사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문, 상담역 및 관계 실무직원을 출석시켜 안건에 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 7 조 (종류)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8 조 (소집권자)

이사회는 제 5 조에 의해 선임된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장 결원 또는 유고 시에는 제 5 조 2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소집절차)

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회의개최 7 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0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이사의 의결권은 각 1 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3. 사내특수관계자에 대한 통제규정 및 업무무관거래규정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른다.
4.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5.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11 조 (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2. 경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이사 아닌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7. 감독기관의 인.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한 사항
8. 영업소의 설치 이전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9. 신주의 발행,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 자산재평가에 관한 사항
11. 사내외의 중요한 행사에 관한 사항
12.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13. 영업보고서 승인 및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사항
14. 기업결합 및 분할에 관한 사항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6. 영업의 전부, 주요한 일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17. 감사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18. 연간 예산, 자본투자계획 및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원 예산 또는 자본투자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한 중대한 변경 또는 일탈 또는 주요 항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
19. 20 억원을 초과하는 가치의 매도계약서 또는 5 억원을 초과하는 비(非)매도 및 비(非)중요 계약의, 체결, 수정, 해지에 관한 사항
20. 최대주주 및 계열회사와의 계약 또는 거래의 체결, 수정,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21. 3 억원을 초과하는 가치의 경영진(이사 포함)과의 고용/서비스 계약서 또는 1 억 5 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치의 기타 고용계약 또는 컨설팅계약서의 체결, 수정,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22. 외부 감사의 선정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3. 회계정책의 수정에 관한 사항
24. 이사회 또는 기타 주요 회사 경영 및 운영에 관련된 회사 규제의 개정, 변경, 또는 수정 및 연간 이익분배에 대한 모든 제안에 관한 사항
25. 10 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차입, 또는 10 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대출 또는 보증에 관한 사항
26. 3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소송 및 분쟁의 시작 또는 합의에 관한 사항
27. 기타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5 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 누적가치 10 억원을 초과하는 설비나 장비의 구매 또는 처분, 또는 지분 또는 사업의 양도 또는 취득
2. 주식으로 변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주식이나 증권의 발행 또는 주식이나 주식으로 변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증권을 청약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권리나 옵션, 워런트의 발행이나 제공
3. 회사가 30 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차용하거나 30 억원을 초고하는 금액을 보증하거나 면책할 경우
4. 회사가 금원을 대출하는 경우
5. 30 억원을 초과하는 가치의 매매계약서 또는 10 억원을 초과하는 가치의 비(非)매도 및 비(非)중요 계약서의 체결, 수정 또는 해지
6. 회생(reorganization), 화의(composition), 청산(liquidation), 해산(dissolution) 또는 유사한 절차를 위한 파산 또는 도산법 하에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법적 절차가 개시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구제나 구제책을 찾거나 이에 동의하는 경우
7. 자회사나 합자회사의 설립, 인수 또는 처분
8. 종업원 주식 구입과 관련된 문제
9. 상기 1~8 항까지의 거래와는 다른 유형의 모든 거래와 연관되어 발생한) 단일 거래 또는 일련의 관련 거래 당 10 억원을 초과하는 자본 지출 또는 다른 지출

10.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것 이외에 유보금(reserves)(회사의 이익이나 유보 이익의 배분이나 책정(appropriation)에 관련)의 개설
11. 합병
12. 합자회사 또는 주요 협력 협의
13. 회사 정관의 수정
14. 배당금과 관련한 사항
15. 한국 상법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계법령에 따라 채택을 위해 주주회의의 특별의결이 요구되는 기타 사항

제 12 조 (보고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경과 및 결과
2. 기타 이사회의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 13 조 (의안의 제출)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할 의안에 관한 보고문서는 이사회 개최일 7 일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의사록 작성)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사에 비치한다.

제 15 조 (이사회 사무국)

1. 이사회는 이사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의사록 작성과 부의안건의 사후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2. 사무직 직원은 소속직원을 인사발령하여 해당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제 4 장 이사회내 위원회

제 16 조 (이사회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이사회의 판단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이사회내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
   가. 감사위원회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다. 경영전략위원회

라. 리스크관리위원회
마. 투명경영위원회
바. 제도개선위원회
사. 인사위원회
아. 예산심의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1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8 년 12 월 1 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2 년 3 월 16 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 년 3 월 31 일부터 변경 시행한다.